

■ 목 차

■ 지평 소식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3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한국 건설장비업체의 중국 자회사 운영 관련 자문..... 4

한국 바이오업체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 4

홍콩법인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실사 및 자문..... 5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사천 법인의 운송 관련 계약 법률자문..... 5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 사이의 계열회사간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자문..... 6

한국법인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대금회수 관련 소송자문..... 6

[일본] 현대증권의 동경 오피스 빌딩 매입 관련 자문..... 7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양수도 관련 자문..... 7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 시행..... 8

[러시아] 러시아 정부조달 체계 전면 개편(국가계약법 세부내용).....10

[베트남]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 소개.....13

[미얀마] 미얀마에서의 과실송금 방법 및 유의사항.....16

[말레이시아] 우리나라 건설업의 대 말레이시아 진출 시 우선적 고려 사항.....18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최고인민법원, 「식·약품 분쟁사건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20
 인사부 「노무파견감행규정」 공포.....20
 공상총국 「인터넷거래관리방법」 공포.....20
 국무원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21
[베트남] 토지법 개정 예정22
[캄보디아]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사회복지부, 2013년 12월 31일).....27
 담보권 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국토건설관리부 등, 2014년 3월 15일).....27
[미얀마] 미얀마 노동부, 최저 인건비 제정 추진(양곤 무역관 2014년 2월 21일).....28
 미얀마, Thilawa 경제특구 토지임대 예정(양곤 무역관 2014년 3월 4일).....28
 미얀마, Kyaute Phyu 특별경제구역 투자자 입찰 예정(IBK 글로벌 주재원뉴스 2014년 3월 7일).....28
 수출·입 라이선스 등록 온라인신청 가능(미얀마 상무부 홈페이지 2014년 3월 14일).....29
[에티오피아] 글로벌 의류업체의 manufacturing hub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30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31

■ 지평 소식 ■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 양곤에서 미얀마 법제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지평 미얀마팀은 지난 3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미얀마 양곤 상공회의소에서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을 대상으로 '미얀마 법률환경 및 최근 이슈'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본 세미나 에서 법무법인 지평은 미얀마에서 3년 동안 법률적, 제도적 문제들을 해결해 온 실무 경험과 이러한 경

험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가 안전하게 미얀마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 해외업무 사례 - 중국 ■

한국 건설장비업체의 중국 자회사 운영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건설장비업체의 중국 자회사 운영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윤재민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한국 바이오업체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바이오업체의 중국 진출 관련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정철 변호사 서준희 변호사 김옥림 중국변호사

홍콩법인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실사 및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홍콩법인의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실사 및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영 중국변호사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사천 법인의 운송 관련 계약 법률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 물류회사의 중국 사천 법인의 운송 관련 계약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영 중국변호사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 사이의 계열회사간 지분양수도 관련 법률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법인의 중국 자회사 사이의 계열회사간 지분양수도에 대해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영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한국법인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대금회수 관련 소송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한국법인의 수출입거래에 관한 대금회수에 관한 소송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정식 변호사 경영동 중국변호사 부영 중국변호사
상해 사무소장

■ 해외업무 사례 - 일본 ■

현대증권의 동경 오피스 빌딩 매입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현대증권이 일본의 간접투자거래구조("TK-GK구조")를 통해 일본 동경 중심지에 위치한 약 670억 원 규모의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는 거래와 관련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최진숙 변호사 김혜라 변호사 박경택 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일본 기업과 한국 기업 간의 반도체 사업부문 영업양수도 관련 자문

법무법인 지평은 일본 기업의 반도체 사업부문을 양수하려는 한국 기업 측을 대리하여, 영업양수도에 관한 전반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양영태 대표변호사 강울리 변호사 장윤정 변호사 김홍영 전문위원

■ 해외업무 논단 - 중국 ■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 시행



(법무법인 지평 상해 사무소 [경엽동 중국변호사](#))

중국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건설에 발맞추어 상해시 외환관리국은 국가외환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월 28일에 「중국(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시행세칙(外匯管理實支持試驗區建設施細則)」(이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을 제정하여, 아래와 같이 해당 지역 내의 외화 관련 심사 승인 절차를 대폭 줄이거나 간소화하는 조치를 제도화하여 상해자유무역시범지역의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1.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외환등기절차 진행 기관을 기존의 외환관리국에서 은행으로 변경

기존의 외환관리정책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 외환등기 및 변경은 각 지방 외환관리국에서 진행하여야 했으며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웠습니다. 그 예로 외국인투자자가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외환관리국에 외환등기를 한 후, 은행에 외환관리국으로부터 취득한 외환관리등기증을 제출하면 은행은 해당 등기증에 기재된 번호에 따라 외환관리국에 재차 사실확인을 하여야 비로소 자본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외환관리국에서의 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직접 은행에서 외환등기와 자본금계좌 개설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외국인투자기업 외화자본금에 대하여 외환자유결제 시행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외화자본금은 "사용한 만큼 (인민폐로) 결제하고 수요에 따라 (인민폐로) 결제"하는 원칙에 따라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정당한 지급처가 없이 외화자본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예금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의 의지에 따라 인민폐로 환전 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되었는바 외화자본금의 원활한 사용과 더불어 환율변화에 따른 리스크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대외담보 사전 인허가 취소

기존의 정책에 따르면 내국인기업이 대외담보를 제공하기 위하여서는 외환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의 시행으로 해당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라면 내국인기업도 대외담보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직접 대외담보 제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전 인허가 절차의 취소와 더불어 대외담보 관련 기존의 담보 관계자 간의 순자산 비율, 지분 관계, 피담보인의 수익상태 관련 제한사항도 해제되어 대외담보 제공이 당사자 간 의지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대외담보 사전 승인은 취소되었지만 대외담보등기와 대외담보이행 승인은 여전히 진행하여야 합니다.

위 3가지 조치 외에도 '자유무역시범지역 외환관리세칙'에서 금융리스업체는 경내에서 외화자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리스업 발전을 위한 조치, 다국적기업 본사의 자금운용 편의를 위한 조치를 출시하여 이러한 기업들의 대거 유치도 꾀하고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러시아 ■

러시아 정부조달 체계 전면 개편(국가계약법 세부내용)¹(법무법인 지평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3. 계획입안(계속)

3) 구매 타당성

국가계약법은 발주 당사자들이 각각의 구매에 대해 타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매 타당성은 구매계획 및 일정계획 작성 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예정된 구매가 국가계약제도 관련 법령 및 기타 법규의 시행 목적 및 요건에 부합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국가계약법에 포함되어 있는 구매 타당성에 관한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구매는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실시되어야 한다고 국가계약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구매는 1) 러시아 국가프로그램(사업)에서 설정한 대책의 목적 달성 및 집행, 2) 러시아의 국제적인 의무 이행, 러시아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국가 간 목적사업의 집행, 3) 러시아 국가기관,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 주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의 기능 및 권한 행사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구매계획에는 구매대상물이 바로 어떤 방식으로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것인지 반드시 타당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한편, 일정계획에는 계약 최초(최대)금액 및 공급업자(사업자) 선정 방식에 대한 타당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발주 당사자들은 구체적인 구매 시점에 계약

¹ 이번 호 칼럼은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2013년 8월호 논단(링크: [러시아 정부조달 체계 전면 개편](#))의 연재입니다.

의 최초(최대) 금액에 대해서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구매 타당성에 대한 요건이 현저히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모니터링, 회계감사 및 구매 분야 감독 과정 중 구매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독기관은 밝혀진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명령을 내려야 하고, 위반당사자에게는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4) 표준화

국가계약법은 정부 및 지방의 수요를 위해 취득하게 되는 상품, 용역 및/또는 서비스는 해당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나, 잉여적인 특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사치대상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구매 부분에서의 표준화는 구매가 예상되는 상품, 용역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요건기준을 설정하고 국가기관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1) 러시아연방 정부는 표준화에 관한 법규 입안/제정 절차와 내용에 관한 일반요건을 정하는 한편, 개별 종류의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반요건 및/또는 발주 당사자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2) 러시아연방 정부의 일반요건을 토대로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은 자신에게 맞는 표준화 규칙을 제정하며, 3) 이외 국가예산외기금 운영기관, 국영기업 '로스아톰' 등은 개별 종류의 상품, 용역 및 서비스에 대한 요건을 정하고 이들 기관/기업의 원활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표준비용기준을 확립하여야 합니다.

5) 구매 공론화

국가계약법은 구매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와 그 진행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매계획이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된 날로부터 공론화는 시작되어, 경쟁입찰 또는 경매참가 신청서 제출종료일 5 일 이전에 종료되거나 견적요청서(RFQ) 참가신청서 제출종료일 2 일 이전에 종료됩니다. 한편, 공론화 과정 진행 없이 공론화 대상이 되는 상품, 용역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뿐 아니라 주정부 및/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

에서도 주정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해당 수준에 상응하는 구매 공론화 경우를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국가계약법에 반영되어 있는 구매 의무 공론화에 관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시행됩니다. 그 이전인 2014년 및 2015년까지는 계약 최초(최대)금액 또는 단일 사업자와의 수의계약금액이 1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²에 따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간 중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도 개별적으로 해당 수준에 상응하는 의무 공론화 경우를 정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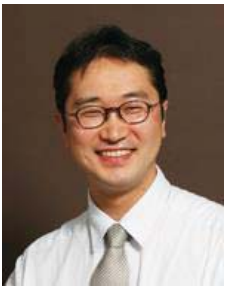
더욱이 국가계약법은 구매계획, 일정계획, 구매 도서에 대한 변경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론화 결과에 따른 구매 취소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가발주법은 어떠한 구매에 대해서도 공론화를 거칠 의무를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존 국가발주제도하에서 이러한 공론화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 정부의 서면답변(2012년 8월 2일)에도 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당사자들에게 10억 루블을 초과하는 금액의 구매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² 이러한 절차에 관한 세부규정은 러시아연방 경제개발부에서 정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베트남 ■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 소개

(법무법인 지평 [정정태 변호사](#) · 호치민시티 사무소장)

2013년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도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정부는 중국 등에서 대규모로 밀려드는 외국인 노동자의 수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엄격하게 외국인 노동허가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주재원 파견 또는 현지채용을 할 때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외국인 노동허가 제도에 대해서는 베트남 정부의 2013년 9월 5일 자 Decree No. 102/2013/ND-CP(이하 'Decree 102')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허가를 받을 수 있는 인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Decree 102 제3조).

- ① 본사 파견 근로자 : 본사에서 12개월 이상 근무한 managers, executive officers, experts 및 technicians
- ② 자원봉사자(Volunteers)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의 집행을 위해 베트남에서 자발적으로 근무하는 무급 근로자
- ③ Experts : 동종 업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engineers 및 bachelors
- ④ Technicians : 1년 이상 기술 훈련을 받고 동종 업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

2. 외국인 채용 계획의 승인

외국인 채용을 위해서는 현지법인에서 미리 연간 채용 계획을 관할기관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Decree 102 제4조). 즉 현지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지위에 대한 외국인 채용 수요를 정하여 본점 소재지 관할 성(Province)급 인민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 수요에 대한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변동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인민위원장은 보고된 지위에 대한 외국인 채용을 승인하는 서면을 발급합니다.

3. 노동허가를 받기 위한 자격요건(Decree 102 제9조)

- ① 법률상 행위능력과 권리능력이 있을 것
- ② 건강할 것
- ③ manager, executive officer, expert 또는 technician에 해당할 것
- ④ 본국 및 베트남 법률에 따른 형사범이거나 형사 소추 절차가 진행 중이지 않을 것
- ⑤ 관할 기관에 의해 채용 계획이 승인되었을 것

4. 노동허가 신청 서류(Decree 102 제10조)

- ① 노동부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작성한 신청서
- ② 본국 또는 베트남에서 발급된 건강진단서
- ③ 신청 전 6개월 내 발급된 범죄경력조회서
- ④ 경력 증명서
- ⑤ 성급 인민위원장이 발급한 채용 계획 승인서
- ⑥ 신청 전 6개월 내 촬영한 컬러 사진 2매(4cm x 6cm, 탈모, 정면, 귀 노출, 안경 미착용, 흰색 배경)
- ⑦ 유효한 여권 사본
- ⑧ 본사 파견 근로자는 본사 경력 확인서

본사 근무 경력 12개월 이상의 인원이 현지법인으로 파견 나올 경우(본사 파견 근로자)에는 비교적

노동허가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사 경력이 없는 인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지인으로 총원할 수 없고 외국인을 채용하여야만 하는 사정을 기관에 설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동종 경력 5년 이상의 expert, 또는 기술 교육 1년과 동종 경력 3년 이상의 technician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에서 대학을 졸업한 유학생들이 현지법인에 취업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으나, 위와 같은 노동허가 요건은 유학생들의 현지취업에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5.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

노동허가 외에 현지 체류(거주)를 위해서는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을 받아야 합니다. 즉 노동허가는 노동법에 따라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것이고, 비자 또는 임시거주증은 출입국 및 체류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2가지 모두 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유효기간이 비교적 짧으므로, 임시거주증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노동허가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허가 기간에 상응하여 2년의 임시거주증이 발급됩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미얀마 ■

미얀마에서의 과실송금 방법 및 유의사항

(법무법인 지평 [정철 변호사](#))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에 근거하여 투자한 외국인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금액을 관련 외국환의 지정된 환율(관리형 변동환율제에 따른 시장환율을 의미함)에 따라 계좌가 개설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로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인투자법 제 39조, 외국인투자법 시행령 제146조).

- ① 외국 자본을 도입한 자에게 권리가 있는 외화
- ② 미얀마투자위원회(MIC)가 외자를 도입한 자에게 회수를 허용한 외화
- ③ 외자를 도입한 자가 획득한 연간 총 수익으로부터 제세금 및 관련 유보금을 공제한 순이익
- ④ 국내에서 외국인이 근무하면서 취득한 급여 및 적법한 소득에서 제세금 및 지정된 방법에 따라 본인과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적법한 잔여 금액

다만, 미얀마에서 외화를 송금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중앙은행 산하의 외국환관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아직까지는 절차상 외화송금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하에서는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① 배당금, ② 대출금 및 이자송금, ③ 용역대금 송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배당금 송금

배당금 송금의 경우 배당선언을 위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 등 미얀마 회사법상의 적법한 절차와 함께 국세청의 법인소득세 및 상업세 사정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출 원리금

대출금과 관련하여서는 대출금으로 신고되어 투자된 대출 원리금 및 이자의 해외 송금이 가능하나, 이자에 대해서는 15%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다만, 한국의 경우 한-미얀마 조세조약에 따라 1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3. 용역대금

외국인(외국기업)이 제공한 용역으로 인해 발생한 용역대금도 해외로 송금할 수 있으며, 이때 해외 소재 외국인(외국기업)의 용역제공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는 계약대금 총액의 3.5%입니다.

위와 같이 이자 및 용역대금 송금 시 미얀마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및 기타 본국의 조세 관련 법령에 따라 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외국환 취급은행

기존에는 미얀마투자상업은행(MICB)에서만 해외로의 송금이 허용되었던데 반해, 현재는 자산규모 1위인 캄보자은행(Kanbawza Bank) 및 자산규모 3위인 코오퍼레이티브은행(Co-operative Bank) 등 민간은행에서도 해외 송금 업무가 가능해져서 외국인투자자의 송금은행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다만, 해외송금을 위해서는 조세납부확인서, 감사보고서 혹은 감사인의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중앙은행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승인절차는 필요 서류준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중앙은행의 검토 기간만 약 2주에 달하는 비교적 까다로운 절차이므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해외업무 논단 - 말레이시아 ■

우리나라 건설업의 대 말레이시아 진출 시 우선적 고려 사항



(법무법인 지평 [한승혁 호주변호사](#) · 말레이시아팀 팀장)

우리나라 기업의 대 말레이시아 투자 관련 초기 자문에 있어서 가장 자주 접하는 질문은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해 법인(locally incorporated company)을 설립해야 하는지, 혹은 지점(Branch)을 개설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투자자의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점 개설의 경우,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MITI")의 Domestic Trade Division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Registrar of Companies(회사등기소)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한편, MITI의 실무적 입장은 외국투자가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정부나 관급 공사를 수주한 외국기업이 아닌 이상 지점 개설 허가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건설업 진출의 경우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적 측면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는 25%이며 외국회사의 지점의 경우에도 말레이시아에서 파생되는 소득에 대해 25%의 법인소득세율이 적용되며, 지점송금세(Branch remittance tax)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발성 프로젝트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말레이시아에서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9년 총리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국가전략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 외국인의 100% 단독 투자("100%외투법인")가 가능해졌으나 실무적으로는 정부기관, 공기업 및 관급공사에 100%외투법

인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어렵거나 무의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외국건설회사가 말레이시아에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말레이시아 건설산업위원회 (“CIDB”)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하는데 CIDB는 건설회사의 최소 납입자본금 및 수주 가능 금액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등급별 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등급	최소 납입자본금(RM)	수주 가능 금액(RM)
G7	750,000	제한 없음
G6	500,000	10,000,000 이하
G5	250,000	5,000,000 이하
G4	150,000	3,000,000 이하
G3	50,000	1,000,000 이하
G2	25,000	500,000 이하
G1	5,000	200,000 이하

그런데 G5 이상의 상위등급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사실상 말레이시아계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명문 규정이 아닌 관련 기관의 관행상 심사기준임).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 실무적인 관점들을 포함한 관련 법제 및 실무적 관행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충분히 반영한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최고인민법원, 「식·약품 분쟁사건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 공포

지난 1월 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식·약품 분쟁사건 법률적용 약간의 문제에 관한 규정」(이하 '식·약품사법해석')을 공포하여 (i) '위조품임을 알면서도 구매한 경우'도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ii) 증정품에 의한 권리침해도 경영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iii) 소비자는 허위광고에서 상품을 추천한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iv) 인터넷쇼핑몰 플랫폼의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정들로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였습니다. '식·약품사법해석'은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인사부 「노무파견잠행규정」 공포

지난 1월 26일, 중국 인사부는 「노무파견잠행규정」(이하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파견된 근로자의 수는 사용자 근로자 총수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2년의 과도기를 부여하였습니다.

공상총국 「인터넷거래관리방법」 공포

최근,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인터넷거래관리방법」(이하 '방법')을 공포하여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으로 구매한 상품에 대하여 소비자는 상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방법'은 인터넷 상품의 경영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SNS를 통한 유료 홍보서비스, 상품평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해당 홍보, 상품평가의

유료 성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국무원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표

최근, 중국 국무원은 「국무원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방안 발행에 대한 통지」(이하 '방안')를 발표하여 전국 범위 내에서의 등록자본금 등기제도 개혁의 실행을 공포하였습니다. '방안'은 등록자본금 납부승인제도의 실시, 회사 최저등록자본금제도의 취소, 기업 연도검사제도를 연도보고·공시 제도로 변경, 회사 주소지 등기절차의 간이화, 전자 영업집조(사업자등록증)의 보급 등 사항들에 대한 개혁조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베트남 ■

토지법 개정 예정

지난 2013년 11월 제9호 뉴스레터³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과 같이, 베트남 국회는 2013년 11월 29일 새로운 토지법을 채택하였습니다. 개정 토지법은 2003년 공표된 현 토지법을 대체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은 종래의 법률적용 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용어와 개념들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국유 및 토지사용권 부여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토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의 추가

현행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외국 단체 및 개인”이라는 용어는 토지사용자가 외교기관 또는 외교관인 경우 외에는 개정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Foreign Invested Enterprises, 이하 ‘외투기업’)”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외투기업은 (i) 100% 외국인투자법인, (ii) 외국인과 현지인의 합작법인, 그리고 (iii) 외국투자자가 주식매매, 인수, 합병 등의 형식을 통해 투자한 국내기업을 뜻합니다. 유의할 점은,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국내기업이 외투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외국투자자가 지배주주인 경우로 한정되는 반면, 합작법인(처음 설립부터 외국인과 현지인이 합작한 법인)의 경우 외국투자자가 지배주주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외투기업으로 인정됩니다.

2. 토지사용권의 부여 형식 통일

³ 관련 링크 : [글로벌 비즈니스 뉴스레터 2013년 11월호 베트남 최신 해외정보 '토지법 개정 예정'](#)

개정법은 외투기업과 현지인이 토지사용권을 부여받는 방식을 통일하였습니다. 즉, 현행법상으로는 외투기업은 임대 방식으로만 토지사용권을 받을 수 있으나, 개정법은 주거시설 개발 목적의 경우 할당 방식도 허용하였습니다. 현지인이 임대받을 경우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현행법은 연납 (yearly payment) 방식만 허용하나, 개정법은 외투기업과 마찬가지로 일시납과 연납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토지사용권 발급에 대한 엄격한 조건

개정법은 일부 특수 지역에 대해 토지사용권을 발급하기 위해 유관 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즉, 10ha 이상의 논과 20ha 이상의 보호림에 대해서는 수상의 동의를 필요하고, 도서 및 국경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관할 부(Ministry)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사용권을 받고자 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자는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고, 기존에 개발사업을 수행 중인 경우에는 그 사업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4. 토지사용권의 취득

외국인 또는 외투기업이 기존 현지인 주주로부터 직접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금지되고, 현지인 개인(법인 제외)으로부터 현물을 출자받는 것이 금지되는 점은 개정법하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면, 국가가 토지사용권을 할당 또는 임대할 때, 원칙적으로 경매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외투기업도 현지인과 동등하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외투기업이 저당권 실행 또는 현물출자 형태로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한편 개정법은 국가가 사회·경제 발전을 이유로 수행하는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이 허용되는 경우를 국회의 결정 또는 수상의 승인을 받은 투자 프로젝트나 관할 지방 인민의회에 의해 승인된 인프라 건설, 공업단지, 신도시, 사회적 주거 개발, 스포츠, 문화 또는 놀이공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

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이 100% 투자한 외투기업은 이러한 국가 주도의 토지정리 작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토지사용권 기간

투자 프로젝트의 토지사용권 기간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일반적으로 최대 50년, 특별한 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70년). 다만 경제구역 내의 프로젝트는 일반적으로 최대 70년의 기간이 허용됩니다.

주택 개발사업자에게 부여되는 토지사용권의 기간은 프로젝트 허가기간과 동일하도록 한 것은 현행법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개정법은 개발사업자로부터 분양받은(매수한) 사람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즉, 영구적인)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내국인 개인에 대해서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즉, 영구적인) 거주 목적의 토지사용권을 할당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해석상 법인은 영구적인 토지사용권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6. 프로젝트 실행 지연의 효과

현행법상으로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권이 부여된 토지의 경우 프로젝트의 개시가 12개월 이상 연기되거나 프로젝트의 진행이 허가된 일정보다 24개월 이상 늦어졌을 때 국가가 일정 비용의 보전 후에 토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정법에서는 토지사용자가 최대 24개월의 범위 내에서만 프로젝트 실행 시기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때에도 연장된 기간 동안의 토지사용료를 국가에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장된 기간이 지난 후에도 토지사용자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토지를 일체의 보상 없이 토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7. 토지사용권의 담보 제공

외국 금융기관도 토지에 대한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개정법은 현행법과 동일하게 베트남에서 인가를 받아 영업 중인 금융기관만 부동산 담보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법은 담보권 실행으로 토지사용권이 이전될 경우 국가가 직접 취득자에게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담보권 실행 절차가 보다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8. 토지 가격

개정법은 매 5년마다 표준공시지가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현재는 매년 발표). 이와 별도로, 지방 인민위원회는 토지의 위치, 인프라 및 용도를 고려하여 특정 부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세금, 행정벌, 보상금 등의 산정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사용료와 임대료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9. 토지 분할 및 양도

개정법은 주택 개발사업자가 인프라 공사 및 토지사용료 납부를 완료한 뒤에는 토지를 분할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사용권증서를 발급받은 뒤에는 프로젝트(전부 또는 일부)에 수반하여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자금부족 상황에 부딪힌 다수의 개발자들과 구매자들을 위해 시장상황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 공업단지의 토지

개정법상 국가로부터 토지를 임차하는 공단 개발자는 임대료 지급 방법을 연납 또는 일시납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현행법상으로는 현지법인인 공단 개발자는 연납만 가능). 만약 일시납으로 할

경우, 개발자는 공단 입주자에게 토지를 전대하고 그 전대료를 연납 또는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연납으로 할 경우, 개발자는 공단 입주자로부터 전대료를 연납 방식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으로는 공단 개발자가 자신의 임대료는 연납하면서도 입주자로부터 전대료를 일시납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이 개정법하에서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11. 등기 전산화

개정법은 자원환경부 관할하에 부동산등기를 전산화하여 일반인이 일정 수수료를 내고 열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행 시기는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정책 집행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캄보디아 ■

최저임금 인상안 발표(사회복지부, 2013년 12월 31일)

캄보디아 사회복지부는 2013년 12월 31일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의 80달러에서 100달러로 인상하도록 하고 향후 위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에 대해 검토할 실무조직을 신설하도록 규정한 새로운 섬유, 봉제 및 신발공장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Prakas on Determination of Minimum Wage for Workers/Employees in the Textile, Garment and Footwear Industries)을 발표하였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산업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최저임금은 2014년 2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담보권 등록에 관한 규정 시행(국토건설관리부 등, 2014년 3월 15일)

국토건설관리부 등에 의해 제정된 민법상 담보권에 관한 내용의 하위규정인 권리 등록 절차에 관한 규정(The Inter-Ministerial Prakas concerning the Real Rights Registration Procedure Pertaining to the Civil Code)이 2014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토지국에 담보권을 등록할 때 피담보채권의 원금, 이자 등에 관한 실체적 사항을 신고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규정의 시행으로 향후 복수의 담보권자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후순위담보권자가 선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어 채무자 입장에서도 동일 물건에 대한 복수의 담보 제공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미얀마 ■

미얀마 노동부, 최저 인건비 제정 추진(양곤 무역관 2014년 2월 21일)

미얀마 노동부가 ILO (International Labor Organizing)와 MMRD (Myanmar Marketing and Research Development)와 협력하여 미얀마의 공장 및 작업장 82곳의 근로자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근로자 59% 이상이 급여에 대해 불만족하고 있으며, 한 달 생활비로 생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제조업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가장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미얀마 노동부는 이번 6월에 개최되는 국회에 2014년 말까지 최저 인건비를 정할 수 있도록 제청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미얀마, Thilawa 경제특구 토지임대 예정(양곤 무역관 2014년 3월 4일)

미얀마 Thilawa 경제특구를 담당하고 있는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imited는 Thilawa 경제특구계획 첫 단계에 투자할 회사들은 4월 말부터 토지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Thilawa 경제특구의 기초인프라는 80% 정도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향후 전기 및 수도를 포함한 임대료는 다른 공단 시세보다 약 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담당자는 토지임대 기간은 70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토지임대 6개월 이후로 계획을 가동하지 못하는 경우 토지를 회수조치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hilawa 경제특구 기초인프라 구축은 일본 Penta Ocean사와 미얀마 Suntac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Kyaute Phyu 특별경제구역 투자자 입찰 예정(IBK 글로벌 주재원뉴스 2014년 3월 7일)

미얀마 정부는 Kyaute Phyu 특별경제구역 설립을 위한 공사 투자자 입찰을 2014년 3월부터 11월 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 특별경제구역 투자절차는 4단계 걸쳐 진행되는데 (1) 1단계는 Kyaute

Phyu 특별경제구역 설립계획 수립(2012년 1월~2013년 7월), (2) 2단계는 자문사 선정(2013년 8월 ~2014년 2월, 싱가포르 회사인 CPG(Creative Professional Group) 선정 완료), (3) 3단계는 공사 투자자 입찰 및 모집(금차 모집), (4) 4단계는 Kyaute Phyu 특별경제구역 공사 시작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수출·입 라이선스 등록 온라인신청 가능(미얀마 상무부 홈페이지 2014년 3월 14일)

미얀마 상무부(www.commerce.gov.mm)는 2014년 3월 1일부터 수출·입 라이선스 및 위탁(Consignment) 관련 등록을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Myanmar Tradenet Website (www.myanmartradenet.com.mm)에서 신청하고자 하는 등록 양식을 선택하여 접수하는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신청, 연장, 수정, 공증신청 등을 위한 온라인 비용으로 2,500짜트, 등록카드비용으로 500짜트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에티오피아 ■

글로벌 의류업체의 manufacturing hub로 부상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난 3월 13일 Tesco가 에티오피아에서 의류사업을 확정하고, 생산량을 점차 늘려가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의류제조업체인 H&M도 에티오피아에서 생산기반을 확정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글로벌 의류업체의 이와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의료수입국의 지위에 있던 아프리카가 의료수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의류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글로벌 의류업체의 생산기지 역할을 했던 곳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동남아시아였지만, 특히 유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가 지리적 이점 때문에 동남아시아에서 아프리카(특히, 북아프리카)로 의류업체의 대이동이 기대된다는 의견입니다. 특히, 최근 의류 트렌드가 fast fashion(빠른 생산 및 빠른 소비)인 만큼 주요 소비시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프리카의 위치는 글로벌 의류 브랜드에게 충분한 이점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프리카가 새로운 manufacturing hub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과거 인도, 파키스탄, 중국 시장이 그랬듯이 글로벌 제조업체의 윤리적 이슈는 잠재적인 리스크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신 해외정보 - 나이지리아 ■

아프리카에서 인터넷 사용 인구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도입된 지 25년이 지났고, 해저케이블을 통해 아프리카에 처음으로 인터넷이 도입된 지는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저케이블을 통한 아프리카 인터넷의 대역폭은 전 세계 인터넷 대역폭에서 0.2% 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고, 아프리카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사용 요금이 비싼 대륙입니다. 이런 아프리카에서 최근 수년간 인터넷 사용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모바일 device 덕분입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매년 인터넷 기반의 전자상거래 사업이 25.8%의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고, 나이지리아 인구의 약 40%가 모바일폰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아프리카의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들이 속속들이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통신업체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아프리카 대륙 진출이 기대됩니다.